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보육정보 - 보육료지원	3
보육료 지원안내	3
만0~2세 보육료	3
만3~5세 보육료 (누리공통과정)	3
보육료 지원기준 연령	3
보육료 지원금액	3
장애아 보육료	4
지원대상	4
지원금액	4
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	4
다문화 보육료	5
지원대상	5
지원금액	5

[아동복지](#)
보육정보
[청소년복지](#)
[· 보육료지원](#) [· 가정양육수당지원](#) [· 보육시설현황](#)

보육료 지원안내

만0~2세 보육료

지원대상: 어린이집 이용 원아(만0~2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

만3~5세 보육료 (누리공통과정)

- 지원대상: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(3~5세반)로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
- 취학유예: 만6세아('16. 1. 1.~'16.12.31.출생) 초등학교 취학유예 시 1차에 한하여 지원
- 초중등교육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질병 등의 사유로 취학유예를 한 경우
- 조기입학: '23.1.2.~3.1. 기간 중 만3세에 도달한 아동('20.1.2.~3.1.생)으로 조기입학 희망자
-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
◎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

구분	기준일자
만0세반	'22.01.01. 이후 출생
만1세반	'21.01.01.~'21.12.31.
만2세반	'20.01.01.~'20.12.31.
만3세반	'19.01.01.~'19.12.31.
만4세반	'18.01.01.~'18.12.31.
만5세반	'17.01.01.~'17.12.31. (취학유예아동인 경우 '16.1.1.~'16.12.,31)
취학아동(방과후보육료)	'16.01.01.~'16.12..31.

◎ 보육료 지원금액

유형	지원구분	연령	부모보육료 (기본보육)	부모부담보육료
		만0세	514,000	0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인건비지원 어린이 집	만0~5세반 보육료·다문 화보육료	만1세	452,000	0
		만2세	375,000	0
		만3세	280,000	0
		만4세	280,000	0
		만5세	280,000	0
	장애아보육료	구분 없음	559,000	0
누리(만3~5세반장애아) 보육료	만3~5세	559,000	0	
기관보육료지원 어린이집	만0~5세반보육료·다문 화보육료	만0세	514,000	0
		만1세	452,000	0
		만2세	375,000	0
		만3세	280,000	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의차액
		만4세	280,000	
		만5세	280,000	
	장애아보육료	구분 없음	559,000	
누리(만3세~5세반장애아)보육료	만3~5세	559,000		

※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(만 3세반 이상) 아동은 시·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내에서 해당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보육료의 차액만큼을 부모가 부담. 단, 영아(만 0~2세반)는 차액 부담이 없으며, 유아(만 3세반 이상)의 경우라도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 부담없음

장애아 보육료

지원대상

12세 이하 아동으로써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, 가구의 소득·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
지원금액

장애아반에 편성된 아동 : 532,000원(방과후 장애아동 : 266천 원)

일반아동반에 편성된 아동 : 반별 보육료 상한액(방과후 장애아동 :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%)

장애아 보육료 지원 기준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를 소지한 12세 이하 미취학 또는 취학 장애아동
 - 장애인복지카드(등록증)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
 - "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"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세~만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·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
- *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21년 3월부터 지원

다문화 보육료

지원대상

- "다문화가족지원법"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이하 아동, 가구의 소득·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
- 취학유예·연기 아동('15.1.1~'15.12.31)인 경우,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(1회에 한함)

지원금액

연령별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

GANGJIN
Web Contents

